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조영민

전화 033-630-4502 / 팩스 0502-193-4573

## 보도자료

2022. 3. 23. (수)

### 제 목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검사 직권 재심 청구

- 속초지청(지청장 조두현)은 금일 ‘창동호 남북 사건’과 관련 1972년 유죄판결을 받은 인권침해 피해 당사자 1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.
- 이번 직권 재심 청구는 2020년 ‘창동호 남북 사건’의 공동피고인들 4명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현재까지 재심이 개시되지 않은 나머지 1명에 대한 것입니다.
- 향후에도 속초지청은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# 1 직권 재심 청구 배경

- 속초지청은 '22. 3. 2. 「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진실규명 협력 TF」를 출범하고 '22. 3. 8. 「동해안 남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」과 면담을 하였습니다.
- 위 면담에서 ‘창동호 남북 사건’ 관련 재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당사자의 유족 및 시민모임 측에서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.  
※ 당사자는 트라우마로 인해 과거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고 재심 개시 전 사망
- 이에 사건기록,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, 불법구금 사실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, 이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에 앞서 금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.

## 2

### 직권 재심 청구 대상 사건

#### ○ 재심 청구 대상자

- A (2016. 6. 21. 사망)

#### ○ 사건 내용

- '71. 5. '창동호' 선원 A가 선장 B 등과 공모하여 어선 조업 중 어로한계선 및 군사분계선을 넘어 반국가단체 지배 지역으로 탈출 [반공법위반, 국가보안법위반, 수산업법위반]
- '72. 8. 17. 속초지원 선장 B 징역 1년, 선원 A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 선고(항소기각 확정)

#### ○ 공범 재심 결과

- '20. 7. 15. 속초지원 B 등 공범 4명 무죄 선고(항소포기 확정)

## 3

### 향후 계획

- 속초지청은 진실화해위의 직권조사에 적극 협력하고, 재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사의 공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☑